

한국농촌경제연구원-충남연구원

업무협력 협약서

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충남연구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간 공동연구 및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친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, 공동관심 분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양 기관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상호 흐트려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.

- 가. 농업·농촌 분야의 연구 및 정보교류
- 나. 농업·농촌 분야의 공동연구 및 의제 발굴
- 다. 세미나 및 워크숍의 공동 개최
- 라. 연구보고서, 출판물 및 기타 소장 자료의 교환
- 마. 연구 인력의 교류
- 바. 기타 양 기관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 등

제4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규정한 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조정) 양 기관은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반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비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,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7조(고지의무) 본 협약의 체결 이후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, 이를 자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는 양 기관의 서면 합의로 변경하거나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효력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협의 중단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제10조(보관) 본 협약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, 각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5월 23일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원 장 김 창 길

김 창길

충남연구원

원 장 강 현 수

강현수